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 415- (106) (전화번호 75-6593)	전 결 규 정 그 조 항 부 서 장 전 결 사 항
처리기간	제 2 부 시 장	
시행일자		
보존년한		
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	합	법무담당관(고시안심사)
	도시계획과장		시민과장
	지역계획과장		종합계획과장
기안책임자	권 완	75.4.12.이제철	조
가로계획과장			

경수참조	각안참조	발신	시 장	통 제

제 목 도시계획 용도지역일부변경 지적승인

제 1 안 내부검제 **고시제 18호**

1. 도시계획 지적고시 변경요령 양점결정에 의하여 서울시 고시 제722호(74.8.26)로 지적고시한바 있는 퇴계로 부근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123호(73.4.4) 규정에 의하여 일부변경 고시하고자 하오니 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지적승인조서 단위 **M<sup>2</sup>**

용도지역구분	위 치	면적	비 고
상업지역	중구 퇴계로	6,271,600	11,000
	일부지역		6,297,000

\* 도면표시와 같음.

첨부. 변경 지적고시도면 (1:1,200) 1부	고시안심사 1975. 4. 16 제 45
제 2 안 고시안	심사자 법제계장 법무담당관
· · · 상용특변적고시 제 · · · 호	전 결 사

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지적승인

1. 서울시고시 제722호(74.8.16)로 지적고시 한바 있는 상업 지역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723호 규정에 의하여 일부변경 고시한다.

2.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가.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지적승인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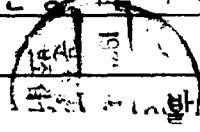
용도지역구분	위 치	면적			비 고
		당초	변경 전	변경 후	
상업지역	중구 퇴계로	6,271,600 <sup>㎡</sup>	11,000	6,287,000	
	일부 지역				

\* 도면생략

\*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.

제3안

수신 건설부장관



발신 시장

제목 동 건

1. 도시415-1426호(74.8.26)에 관련입니다.

2. 서울시고시 제722호(74.8.26)로 지적고시 한바 있는 도심부 지역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723호(73.4.4)의 규정의에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표시와 같이 일부변경 지적고시 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부. 고시문 사본 및 고시도면 1부.

제4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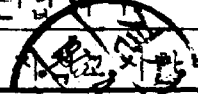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차장

발신 시장

제목 동 건

1. 도시415-1426호(74.8.26)에 관련입니다.

2. 서울시고시 제722호(74.8.26)로 지적고시 한바 있는 중구.



회계로 일부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 고시

제123호 (73.4.4)의 규정에의거 별첨 고시문(상사부) 및 도면표시외같이 일부 변경 지적고시 하였기 통보 하니 제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바라

3. 본 고시사항을 귀청에 비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
에게 보일것이며 민원업무에 지장없기바람.

첨부. 고시문 사본 및 고시도면각1부.

수신처: 중구청장, 성동구청장,

제5안

수신 총무시장관(시:공보실장)

발신 시장(괴장)

제목 관(시)보 게재의뢰

1. 다음과같이 관(시)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 
바랍니다.

가. 관(시)보 게재구분: 고시

나. 관(시)보 게재건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지적

승인

다. 법적근거: 도시계획법 제13조

첨부. 고시문 사본 각2부(1부). 끝.